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 4 부

제28조

1. 인권이사회(이하 이 규약에서 이사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사회는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하에 규정된 임무를 행한다.
2. 이사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인권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이 규약의 당사국의 국민들로 구성하고, 법률적 경험을 가진 약간명의 인사의 참여가 유익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3. 이사회위원은 개인적 자격으로 선출되고, 직무를 수행한다.

제29조

1. 이사회위원은 제28조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선거를 위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2인 이하의 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지명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3. 동일인이 재지명받을 수 있다.

제30조

1. 최초의 선거는 이 규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34조에 따라 선언된 결원의 보충선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위원의 구성을 위한 각 선거일의 최소 4개월 전에, 이 규약당사국이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위원후보 지명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국에 서면 초청장을 발송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들을 지명국 이름의 명시와 함께 알파벳 순으로 명단을 작성하여 늦어도 선거일 1개월 전에 동 명단을 이 규약당사국에게 송부한다.

4. 이사회위원의 선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국제연합 본부에서 소집한 이 규약당사국 회합에서 실시된다. 이 회합은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를 정족수로 하고,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획득하는 후보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제31조

1. 이사회는 동일국가의 국민을 2인 이상 포함할 수 없다.
2. 이사회위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위원의 공평한 지리적 안배와 상이한 문명 형태 및 주요한 법률체계가 대표되도록 고려한다.

제32조

1. 이사회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모든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 재선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9인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된다. 이들 9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 후 즉시 제30조 제4항에 언급된 회합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2. 임기 만료시의 선거는 이 규약 제4부의 전기 조문들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제33조

1. 이사회위원의 어느 한 위원이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일시적 성격의 결석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이라고 다른 위원 전원이 생각할 경우, 이사회위원장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하며, 사무총장은 이때 동 위원의 결석을 선언한다.
2. 이사회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한 경우, 의장은 국제연합 사무총

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사망일 또는 사임의 효력발생일로부터 그 좌석의 궐석을 선언한다.

제34조

1. 제33조에 의해 궐석이 선언되고, 교체될 궐석위원의 잔여임기가 궐석 선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이를 통보하며, 각 당사국은 궐석을 충원하기 위하여 제29조에 따라서 2개월 이내에 후보자의 지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알파벳 순으로 작성, 이를 이 규약의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보궐선거는 이 규약 제4부의 관계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3. 제33조에 따라 선언되는 궐석을 충원하기 위하여 선출되는 위원은 동조의 규정에 따라 궐석위원의 잔여임기 동안 재직한다.

제35조

이사회의 위원들은 국제연합 총회가 이사회의 책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에서 동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수를 받는다.

제36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규정상 이사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제37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최초 회의를 국제연합본부에서 소집한다.

2. 최초 회의 이후에는, 이사회는 이사회의 절차규칙이 정하는 시기에 회합한다.

3. 이사회는 통상 국제연합본부나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사무소에서 회합을 가진다.

제38조

이사회의 각 위원은 취임에 앞서 이사회의 공개석상에서 자기의 직무를 공평하고 양심적으로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제39조

1. 이사회는 임기 2년의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은 재선될 수 있다.
2. 이사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제정하며 이 규칙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 (a) 의사정족수는 위원 12인으로 한다.
 - (b)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투표로 한다.

제40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그러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 (a) 관계당사국에 대하여는 이 규약의 발효 후 1년 이내
 - (b) 그 이후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때
2. 모든 보고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며 사무총장은 이를 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송부한다. 동 보고서에는 이 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사회와의 협의 후 해당 전문기구에 그 전문기구의 권한의 분야에 속하는 보고서 관련 부분의 사본을 송부한다.

4. 이사회는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한다. 이사회는 이사회 자체의 보고서와 이사회가 적당하다고 간주하는 일반적 의견을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이사회는 또한 이 규약의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 사본과 함께 동 일반적 의견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5. 이 규약의 당사국은 본 조 제4항에 따라 표명된 의견에 대한 견해를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4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이 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 당사국의 통보를 접수, 심리하는 이사회 의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을 이 조에 의하여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이 조의 통보는 이 규약의 당사국 중 자국에 대한 이사회 의 그러한 권한의 인정을 선언한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될 경우에만 접수, 심리될 수 있다. 이사회는 그러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에 관한 통보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조에 따라 접수된 통보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a) 이 규약의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이 규약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문제에 관하여 그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통보를 접수한 국가는 통보를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를 해명하는 설명서 또는 기타 진술을 서면으로 통보한 국가에 송부한다. 그러한 해명서에는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동 국가가 당해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취하였든가, 현재 취하고 있든가 또는 취할 국내절차와 구제수단에 관한 언급이 포함된다.

(b) 통보를 접수한 국가가 최초의 통보를 접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가 관련당사국 쌍방에게 만족스럽게 조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당사국 중 일방에 의한 이사회와 타 당사국에 대한 통고로 당해 문제를 이사회에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c) 이사회는, 이사회에 회부된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모든 가능한 국내적 구제절차가 원용되고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다음에만 그 문제를 처리한다. 다만, 구제수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d) 이사회가 이 조에 의한 통보를 심사할 경우에는 비공개 토의를 가진다.

(e) "(c)"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사회는 이 규약에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기초 위에서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f) 이사회는 회부받은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b)"에 언급된 관계당사국들에게 모든 관련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g) "(b)"에서 언급된 관계당사국은 당해 문제가 이사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동안 자국의 대표를 참석시키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h) 이사회는 "(b)"에 의한 통보의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i) "(e)"의 규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보고서를 사실과 도달된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시킨다.

(ii) "(e)"의 규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보고서를 사실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시키고 관계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의견과 구두 의견의 기록을 동 보고서에 첨부시킨다. 모든 경우에 보고서는 관계당사국에 통보된다.

2. 이 조의 제규정은 이 규약의 10개 당사국이 이 조 제1항에 따른 선언을 하였을 때 발효된다. 당사국은 동 선언문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사무총장은 선언문의 사본을 타 당사국에 송부한다. 이와 같은 선언은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이 철회는 이 조에 의하여 이미 송부된 통고에 따른 어떠한 문제의 심의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당사국에 의한 추후의 통보는 사무총장이 선언 철회의 통고를 접수한 후에는 관계당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되지 아니한다.

제42조

1. (a) 제41조에 따라 이사회에 회부된 문제가 관계당사국들에 만족스럽게 타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관계당사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 특별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이 규약의 존중에 기초하여 당해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 (b) 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국에게 모두 수락될 수 있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관계당사국이 3개월 이내에 조정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성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보지 못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비밀투표에 의하여 인권이사회 위원 중에서 인권이사회 위원 3분의 2의 다수결 투표로 선출된다.
2.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동 위원은 관계당사국, 이 규약의 비당사국 또는 제41조에 의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조정위원회는 자체의 의장을 선출하고 또한 자체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4.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본부 또는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사무소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동 회의는 조정위원회가 국제연합 사무총장 및 관계당사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기타 편리한 장소에서도 개최될 수 있다.

5.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은 이 조에서 임명된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도 역무를 제공한다.

6. 이사회가 접수하여 정리한 정보는 조정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국에게 기타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조정위원회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 또는 당해 문제를 접수한 후, 어떠한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에, 관계당사국에 통보하기 위하여 인권이사회의 위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a) 조정위원회가 12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에 대한 심의를 종료할 수 없을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를 당해 문제의 심의현황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 국한시킨다.

(b) 조정위원회가 이 규약에서 인정된 인권의 존중에 기초하여 당해 문제에 대한 우호적인 해결에 도달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를 사실과 도달한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 국한시킨다.

(c) 조정위원회가 "(b)"의 규정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조정위원회의 보고서는 관계당국간의 쟁점에 관계되는 모든 사실문제에 대한 자체의 조사결과 및 문제의 우호적인 해결 가능성에 관한 견해를 기술한다. 동 보고서는 또한 관계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의견 및 구두 의견의 기록을 포함한다.

(d) "(c)"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출되는 경우, 관계당사국은 동 보고서의 접수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권이사회의 위원장에게 조정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의 수락 여부를 통고한다.

8. 이 조의 규정은 제41조에 의한 이사회에 책임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9. 관계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제출하는 견적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모든 경비를 균등히 분담한다.

10.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 제9항에 의하여 관계당사국이 분담금을 납입하기 전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43조

이사회의 위원과 제42조에 의하여 임명되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계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한 직무를 행하는 전문가로서의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44조

이 규약의 이행에 관한 규정은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구의 설립헌장 및 협약에 의하여 또는 헌장 및 협약하에서의 인권 분야에 규정된 절차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이 규약당사국이 당사국간에 발효 중인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정에 따라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른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이사회는 그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한다.

제 5 부

제46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에서 취급되는 문제에 관하여 국제

연합의 여러 기관과 전문기구의 책임을 각각 명시하고 있는 국제연합 헌장 및 전문기구 헌장의 규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47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모든 사람이 그들의 천연적 부와 자원을 충분히 자유로이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6 부

제48조

1. 이 규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전문기구의 모든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모든 당사국 또한 국제연합 총회가 이 규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한 기타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규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규약은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규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제49조

1. 이 규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에 이 규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이 조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이 규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50조

이 규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5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기 자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고,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규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52조

제48조 제5항에 의한 통보에 관계없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동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a) 제48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b) 제49조에 의한 이 규약의 발효일자 및 제51조에 의한 모든 개정의 발효일자

제53조

1. 이 규약은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4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규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서명자들은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1966년 12월 19일 뉴욕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이 규약에 서명하였다.

3-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채택일 1966. 12. 16 / 발효일 1976. 3. 23 / 당사국 수 97 / 대한민국 적용일 1990. 7. 10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규약"이라 칭한다)의 목적 및 그 제규정의 이행을 더욱 잘 달성하기 위하여 규약 제4부에서 설치된 인권이사회(이하 "이사회"라 칭한다)가 규약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침해의 희생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으로부터의 통보를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접수하고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다.

제1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된 규약당사국은 그 관할권에 속하는 자로서 동국에 의한 규약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침해의 희생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으로부터의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하는 이사회에 권한을 인정한다. 이사회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규약당사국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접수하지 않는다.

제2조

제1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규약에 열거된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들은 모든 이용가능한 국내적 구제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이사회에 심리를 위한 서면통보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이사회는 이 의정서에 따른 통보가 익명이거나, 통보제출권의 남용

또는 규약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그러한 통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1. 제3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사회는 이 의정서에 따라 제출된 통보에 대하여 규약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2. 이 당사국은 6개월 이내에 그 문제 및 취하여진 구제조치가 있는 경우 이를 설명하는 서면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5조

1. 이사회는 개인 및 관련당사국으로부터 입수된 모든 서면정보를 참고하여, 이 의정서에 따라 접수된 통보를 심리한다.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으로부터의 어떠한 통보도 심리하지 않는다.
 - (a) 동일 문제가 다른 국제적 조사 또는 해결절차에 따라 심사되고 있지 않을 것.
 - (b) 개인이 모든 이용 가능한 국내적 구제조치를 완료하였을 것. 다만, 이 규칙은 구제조치의 적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이사회는 이 의정서에 따라 통보를 심사할 때에는 비공개 회의를 갖는다.
4. 이사회는 관련당사국과 개인에게 이사회에의 견해를 송부한다.

제6조

이사회는 규약 제45조에 의한 연례보고서에 이 의정서에 따른 활동의 개요를 포함한다.

제7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1960년 12월 14일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식민지와 그 인민에 대한 독립부여 선언에 관한 결의 1514(XV)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국제연합 헌장과 국제연합 및 그 전문기관하에서 체결된 여타 국제협약과 문서에 의하여 이들에게 부여된 청원권을 어떤 경우에도 제한하지 않는다.

제8조

1. 이 의정서는 규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들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발효한다.
5.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제9조

1. 규약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이 의정서는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에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 의정서는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10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11조

1. 이 의정서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 중 최소한 3분의 1이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에,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하에 이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 출석하여 표결하는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기 자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이 의정서 당사국의 3분의 2 다수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고,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의정서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폐기는 동 폐기가 발효하기 전에는 제2조에 의해 제출된 통보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규정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13조

제8조 제5항에 의한 통보에 관계없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규약 제48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 (a) 제8조에 따른 서명, 비준 및 가입
- (b) 제9조에 따른 이 의정서의 발효일자 및 제11조에 의한 모든 개정의 발효일자
- (c) 제12조에 따른 폐기

제14조

1. 이 의정서는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규약 제4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3-2.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채택일 1989. 12. 15 / 발효일 1991. 7. 11 / 당사국 수 44 / 대한민국 미가입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사형의 폐지가 인간의 존엄의 향상과 인권의 전진적 발전에 기여한다고 믿으며,

1948년 12월 10일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3조 및 1966년 12월 16일에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를 상기하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는 폐지가 바람직스러움을 강력히 시사하는 문언으로 사형의 폐지를 언급하고 있음에 유의하며,

사형폐지를 위한 모든 조치가 생명권의 향유에 있어서의 전진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이에 사형폐지를 위한 국제적 약속이 바람직스러우므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이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의 관할 내에서는 누구도 사형을 집행당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 내에서 사형폐지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

1. 전쟁 중 범행된 군사적 성격의 극히 중대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

에 의하여 전쟁시에는 사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유보를 비준 또는 가입시에 하지 않았다면, 이 선택의정서에 대한 어떤 유보도 허용되지 않는다.

2. 위의 유보를 한 당사국은 비준 또는 가입시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전시에 적용되는 국내법의 관련규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의 유보를 한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자국 영역에 적용되는 전쟁상태의 개시 또는 종료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규약 제40조 규정에 따라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이 의정서를 실시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

규약 제41조 규정에 의한 선언을 한 당사국과 관련하여 그 당사국이 비준 또는 가입시에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당사국의 통보를 인권이사회가 수리하고 심의하는 권한은 이 의정서의 규정에도 미친다.

제5조

1966년 12월 16일에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관한 제1선택의정서의 당사국과 관련하여, 그 당사국이 비준 또는 가입시에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관할권하에 있는 개인으로부터의 통보를 인권이사회가 수리하고 심의하는 권한은 이 의정서의 규정에도 미친다.

제6조

1. 이 의정서의 규정은 규약의 추가규정으로 적용된다.

2. 이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유보의 가능성을 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 의정서 제1조 1항에 보장된 권리는 규약 제4조 규정에 의한 어떠한 위반조치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제7조

1. 이 의정서는 규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시행된다.

5.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지한다.

제8조

1. 이 의정서는 열 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부터 발효한다.

2. 열 번째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이후에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가입한 국가에 대해서는 그 국가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발효한다.

제9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어떤 제한이나 예외도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10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규약 제48조 1항이 규정하는 모든 국가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한다.

- (a) 이 의정서 제2조에 의한 유보, 통보 및 통고
- (b) 이 의정서 제4조 또는 제5조에 의한 입장표명
- (c) 이 의정서 제7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 (d) 이 의정서 제8조에 의한 의정서의 발효일

제11조

1.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를 동등한 정본으로 하는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규약 제48조에 규정된 모든 국가에게 송부한다.

부록 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에 관한 림버그 원칙

The Limburg Principl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 Cultural Rights

도입

(i)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에 의해 소집된 국제법 전문가 그룹—림버그 대학 법학부(University of Limburg), 얼번 모건 인권연구소(Urban Morgan Institute for Human Rights), 신시네티 대학(University of Cincinnati)—은 1986년 6월 2일부터 6일까지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Maastricht)에서 만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사회권규약) 내 당사국의 의무 성격, 범위 및 신설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의 당사국 보고서 검토, 그리고 규약의 4부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ii) 29명의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세네갈, 스페인, 영국, 미국, 유고슬라비아, 유엔인권센터(the United Nations Centre for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연방사무국(the Commonwealth Secretariat),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소속 사회권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4명의 참가자.

(iii) 참가자들은 국제법의 현 상태를 반영한다고 믿는 다음의 원칙들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단, 'shall' 대신 'should'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몇몇 권고들은 제외한다.

제1부

당사국 의무의 성격과 범위

(The nature and scope of states parties' obligations)

A. 일반적인 견해(General Observations)

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국제인권법의 불가결한 부분이다. 이 권리들은 다양한 국제조약들(international instruments), 특히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안에서 특정한 조약상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그 선택의정서(the Optional Protocol)와 함께 1976년에 발효되었다. 두 국제인권조약은 세계인권선언을 정교화한 것으로, 국제권리장전(International Bill of Rights)을 이루고 있다.
3.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불가분적이고 상호의존적이므로,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양자 모두의 이행, 증진, 보호에 동등한 관심과 긴급한 고려가 주어져야 한다.
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에 따라 목적과 의도, 통상적인 의미, 준비작업(preparatory work), 그리고 관련 관행을 고려하여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5. 규약을 이행하고 당사국이 이룩한 성취를 모니터할 때에는 인권 분야의 유엔 실무그룹들과 특별보고관들을 포함하여 유엔 인권기구들과 정부간 기구들뿐 아니라 관련 전문기관들의 경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6.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다양한 정치체제하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에 이르는 데 단 하나의 길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경제와 비시장경제, 중앙집권화된 정치구조와 탈중앙집권화된 정치구조 양쪽 모두에서 성공과 실패의 기록은 관찰되어 왔다.

7. 당사국들은 언제나 사회권규약하에서 수락한 의무들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

8. 사회권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들의 완전한 실현은 점진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중 몇몇 권리들의 적용은 즉각적으로 사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나머지 권리들은 점진적으로 사법심사 가능한 권리가 될 수 있다.

9. 민간단체(NGO)들은 사회권규약의 이행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역할은 국제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10. 당사국은 국제사회와 자국민 모두에 대해 규약상 의무를 준수할 책임을 진다.

11. 사회 모든 부문의 완전한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국내적 노력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실현의 진전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이다. 대중의 참여는 국내 정책들의 입안, 적용, 심사를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 요구된다.

12. 사회권규약의 준수에 대한 감독은 협력과 대화의 정신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결국, 사회권위원회는 정부 보고서를 고려하면서, 사회권규약에 명시된 권리의 실현을 방해하는 원인과 요인들을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면, 결론을 확증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조사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13. 당사국의 사회권규약 준수를 평가함에 있어서, 규약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모든 기구들은 법 앞의 평등과 차별금지의 원칙에 특별한 관

심을 두어야 한다.

14. 사회권규약에서 명시한 권리들에 대한 점진적 실현의 발전이 중요하므로, 선주민과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는지를 고려하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그 밖의 권리를 침해받기 쉬운 집단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15. 사회권규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국제경제관계의 동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B. 사회권규약 2부에 관한 해석 원칙(Interpretative Principles specifically relating to Part 2 of the Covenant)

2조 1항 : 특히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하는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to take steps... by all appropriate means, including particularly the adoption of legislation")

16. 모든 당사국은 사회권규약에 포함된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닌다.

17. 국내적 차원에서, 당사국은 규약상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서 권리들의 성격에 부합하는 입법·행정·사법적 조치와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18. 입법조치만으로는 규약의 의무를 실현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나 2조 1항은 현행법이 규약에 근거한 의무에 위반될 경우,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19. 당사국은 사법적 구제(judicial remedies)를 포함하는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

20. 특정국가에서 채택한 수단이 적절한지의 여부는 해당국가에 의해

판단되지만, 사회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해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한 검토는 유엔헌장에 따라 설립된 다른 기관들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to achieve progressively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ights")

21.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할" 의무는 당사국이 가능한 한 신속히 권리의 실현으로 나아가기를 요구한다. 이러한 의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에게 완전한 실현을 위한 노력을 무제한적으로 연기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와 반대로 모든 당사국은 사회권규약하의 의무실현을 위한 조치에 즉각적으로 착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22. 사회권규약하의 몇몇 의무들은 2조 2항의 차별금지와 같이 당사국에 의한 즉각적이고 완전한 이행을 요구한다.

23. 점진적인 달성의 의무는 자원의 증가와는 독립적이다. 그러한 의무는 가용자원의 효과적인 사용을 요구한다.

24. 점진적인 이행은 자원의 증가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 의해서 사회권규약에 인정된 권리들이 실현되는 데 필수적인 사회적 자원(societal resource)의 발전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to the maximum of its available resource")

25. 경제발전의 수준에 관계없이, 당사국은 모든 이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26. '가용자원'이란 한 국가 내의 자원과 국제 협력과 원조를 통해 국

제 공동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원을 모두 포함한다.

27. 사회권규약의 권리 실현을 위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판단할 때, 가용자원의 동등하고 효과적인 사용과 가용자원에 대한 접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8. 모든 이에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존요건의 충족을 보장할 필요성에 유념하여, 가용자원을 사용함에 있어 사회권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데 우선성을 두어야 한다.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individually and through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especially economic and technical")

29. 유엔헌장(55조, 56조)과 사회권규약에 따른 국제 협력과 원조는 시민·정치적 권리뿐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포함하는 모든 인권의 실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0. 국제협력과 원조는 사회권규약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비교 : 세계인권선언 28조)

31. 정치, 경제, 사회적 체제의 차이에 상관없이, 국가는 그러한 차이에 근거한 차별 없이 사회·경제·문화의 국제적 진보를 위해,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32. 당사국은 사회권규약이 인정한 권리의 실현을 상호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국제적 수단에 의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3. 국제협력과 원조는 국가의 주권 평등의 원칙에 기초해야 하며, 사회권규약에 포함된 권리의 실현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34. 2조 1항에 따른 국제협력과 지원을 수행함에 있어, 국제기구의 역할과 민간단체(NGO)의 기여를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

2조 2항 : 차별금지(Non-discrimination)

35. 2조 2항은 즉각적인 적용과 당사국에 의한 명시적 보장을 요구한다. 따라서 2조 2항은 사법적 심사 및 기타 권리구제 절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36. 2조 2항에서 언급된 차별의 근거들은 더 추가될 수 있다.

37. 사회권규약 당사국이 됨과 동시에 국가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영향을 주는, 작위와 부작위를 통한 모든 차별적인 법과 규칙 그리고 관행들을 즉각적으로 폐지함으로써 법률상의 차별을 제거해야 한다.

38. 자원의 부족,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불평등한 향유의 결과로 발생하는 사실상의 차별(de facto discrimination)은 가능한 빨리 종식되어야 한다.

39.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평등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정 집단 혹은 개인들의 적절한 권리 향상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경우, 그러한 목적을 위해 취해진 특별 조치들은 차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집단들에게 서로 구별되는 권리의 보장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조치들은 의도된 목적들이 달성된 후에는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40. 2조 2항은 모든 공적 생활의 영역에서 사인과 사적 조직에 의한 차별행위를 금지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한다.

41. 2조 2항의 적용에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과 협약에 따라 설치된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의 활동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국제조약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조 3항 : 개발도상국에서의 비자국민(Non-nationals in developing countries)

42. 일반 규칙으로서 사회권규약은 자국민과 비자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

43. 2조 3항의 목적은 식민지 기간 동안 특정 외국인 경제 집단에 의한 지배를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2조 3항의 예외는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44. 2조 3항의 좁은 해석이라 함은 특히 경제적 권리의 개념과 개발도상국 개념과 관련된다. 개발도상국이라는 개념은 독립을 획득한 이후 유엔 분류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포함된 나라를 가리킨다.

3조 : 남녀의 동등한 권리(Equal rights for men and women)

45. 3조를 적용함에 있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과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활동, 그리고 다른 관련 제도들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4조 : 권리의 제한(Limitations)

46. 4조는 원래 국가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47. 이 조항은 개인의 온전성(integrity)이나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제한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도된 것은 아니다.

법률에 의해 정해진("determined by law")

48. 사회권규약의 원칙에 부합하며 제한이 적용되는 시점에 이미 발효 중인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내법에 의해 그 제한이 이뤄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행해져서는 안 된다.

49.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행사에 제한을 부과하는 법은 임의적, 비합리적, 혹은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

50.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법적 규칙은 명백해야 하며 모든 이에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5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불법적 혹은 악의적인 제한을 막기 위해서 적절한 보호수단과 효과적인 구제조치가 법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공공복지를 증진하는("promoting the general welfare")

52. 이 용어는 국민 전체의 안녕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in a democratic society")

53. "민주사회에서"라는 표현은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것에 좀더 엄격한 제약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54. 제한을 부과하는 국가는 그 권리의 제한이 사회의 민주적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55. 민주사회의 단일 모델은 존재하지 않지만,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에 인정된 권리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민주사회의 정의

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권리의 성격과 양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compatible with the nature of these rights")

56. "이 권리들의 성격과 양립할 수 있는"이라는 제한요건은 권리의 제한이 해당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위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 혹은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한다.

57. 5조 1항은 법에 특별히 규정된 제한 이외에 국가가 제한을 가할 다른 일반적이고, 함축적인 혹은 잔여의(residual) 권리는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어떠한 법조항도 "인정된 어떤 권리나 자유"를 파괴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없다. 더불어 5조는 규약의 어떤 조항도 자연적 부와 자원을 완전하고 자유롭게 활용하고 향유할 모든 인민의 본래적 권리를 손상시키는 식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58. 5조 2항의 목적은,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보호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보다 유리한 대우를 제공할 수 있는 이미 발효되었거나 발효될 예정에 있는 국내법과 양자간·다자간 조약(treaties) 및 협약(conventions) 혹은 협정(agreements)의 규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데 있다. 또한 5조 2항은 당사국이 수락한 국내적·국제적 의무들에 의해 보다 광범위하게 보호되는 모든 인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C. 특히 사회권규약의 제3부와 관련한 해석 원칙들(Interpretative Principles specifically relating to Part III of the Covenant)

8조 : 법에 의해 규정된("prescribed by law")

59. 4조에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determined by law)"라는 동의어에 대한 해석 원칙을 보라.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60. "민주사회에서"라는 문구에 관한 4조에 기재된 해석원칙에 더하여, 8조에서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제한하는 당사국에게 보다 강력한 제약을 부과하고 있다. 8조는 그 권리에 대한 제한을 아주 필수적인 경우에만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필수적"이라는 용어는 다음의 경우에만 제한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 (a) 그 제한이 절박한 공공의 혹은 사회적 필요에 부응해야 하며,
- (b) 정당한 목적을 지향해야 하며,
- (c) 그러한 목적에 상응해야 할 것.

61. 권리 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모든 평가는 객관적인 고려에 기초해야 한다.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62.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들은 오직 국가의 존재 혹은 영토적 통합성을 보전하고 무력 혹은 무력의 위협에 맞서 정치적 독립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질 때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63. 단지 지역적이거나 상대적으로 고립된 법과 질서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해서 권리 제한을 부과할 경우 그 이유로서 국가안보에 호소

해서는 안 된다.

64. 국가안보는 모호하고 임의적인 권리 제한에 대한 구실로 이용될 수 없다. 국가안보는 그것의 남용에 대한 적절한 보호수단과 효과적 인 구제책이 존재할 때만 호소될 수 있다.

65.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조직적인 침해는 진정한 국가안보를 약화시키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그러한 침해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권리침해에 대한 저항을 지지하거나 혹은 국민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해진 조치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공공질서("public order(ordre public)")

66. 사회권규약에서 사용된 "공공질서"라는 표현은 사회의 기능이나 그 사회가 기초하고 있는 일련의 기본적 원칙들을 보장하는 규칙들의 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존중은 공공 질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67. 공공질서는 이러한 근거 위에서 제한된 개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들의 목적이라는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68. 공공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국가기구 혹은 행정 관리들은 국회, 법원 혹은 다른 권한 있는 독립적인 기관들을 통해 권력행사가 통제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69. 사회권규약상 권리에 대한 제한 근거가 되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의 범위는 규약에서 인정된 자유와 권리를 넘어 확장될 수 있다.

D.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의 침해(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70. 사회권규약에 담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국제법하의 규약 위반이다.

71. 사회권규약 준수에 실패한 요인을 판단함에 있어, 사회권규약은 당사국에게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의 선택에 있어 자유재량의 여지를 주었다는 것, 그리고 합리적인 통제의 선을 벗어난 다른 요인들이 특정 권리들을 이행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72. 다음의 경우에 당사국은 사회권규약을 위반한 것이다.

- 사회권규약이 취하도록 요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권리의 즉각적인 실현을 위해 제거되어야 할 장애물들을 신속하게 제거하지 않은 경우
- 사회권규약에 의해 즉각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된 권리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일반적으로 승인된 최소한의 국제적 성취기준을 의도적으로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
- 사회권규약에 따르려 하기보다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에 제한을 적용한 경우
- 사회권규약이 허용한 제한의 범주를 벗어나거나 가용자원의 부족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권리의 점진적인 실현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중지하는 경우
- 사회권규약에서 요구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3. 국제법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이 규약하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표현하고 그 당사국의 관심에 문제제기를 할 권리가 있다. 제기될 수 있는 모든 분쟁은 평화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관련 국제법의 규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제2부

사회권규약 제4부에 있는 국제협력과 당사국 보고서에 대한 심의(Consideration of States Parties' Report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under Part4 of the Covenant)

A. 당사국에 의한 보고서 준비와 제출

74. 사회권규약 4부에 규정된 감독 장치의 실효성은 당사국 보고서의 질과 정시 제출에 달려 있다. 따라서 각 정부들은 국가보고서를 가능한 한 의미 있게 작성하도록 촉구된다. 이러한 목적에서 각 정부는 해당 부처·기관들과 협의하고, 관련 자료를 구축하며,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배경 문서를 취합하고, 관련 민간단체(NGO) 혹은 국제기구와 논의할 적절한 국내절차를 발전시켜야 한다.

75. 사회권규약 16조에 따른 보고서의 준비는 주요 인권감독기관의 의장들이 1984년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UN Doc. A39/484)에서 제안했던 자문 서비스 프로그램들과 기술적 지원 프로그램의 실행에 의해 좀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76. 당사국은 보고서 작성 의무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정책과 목표에 관한 광범위한 공개 토론의 기회로 간주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가능하다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보고서의 내용을 널리 알려야 한다. 보고서의 준비과정은 또한 관련 국내 정책이 각 권리의 범위와 내용을 얼마나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재검토하고,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을 구체화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77. 당사국은 보고서 준비 과정에 민간단체(NGO)와 함께할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 장려된다.

78. 사회권규약을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 취해진 법적 조치를 보고할 때, 당사국은 모든 관련 법 조항들을 단지 늘어놓기만 해서는 안 된다. 당사국은 사법적 구제와 행정적 절차 그리고 그러한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채택한 다른 조치들과 구제조치 및 절차에서의 관행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79. 권리들이 실제로 보호되는 정도를 보여주기 위해 당사국은 보고서에 양적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통계자료와 예산편성 및 지출에 관한 정보는 의무 준수에 대한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가능하다면, 사회권규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 명확하게 정의된 대상과 지표들을 채택하여야 한다. 그러한 대상과 지표는 각 당사국들에 의해 제출된 자료들을 비교하고 그 관련성을 논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통해 마련된 기준에 근거한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80. 필요하다면, 당사국은 사회권규약의 준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과 성취된 진전에 대한 정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하며, 그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해야 한다.

81. 당사국에 의한 보고서는 국제협력을 통해 보다 진전될 수 있는 영역을 지적하고, 그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유용할 수 있는 경제·기술적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해야 한다.

82. 당사국과 사회권규약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기관들 사이의 의미 있는 대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당사국은 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에 정통한 대표단을 지명해야 한다.

B.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역할(Role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83.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규약에 의해 부여된 실질적인 임무 내에서 경제사회이사회를 보조하는 일을 위임받았다. 특히, 위원회의 역할은 당사국 보고서를 검토하고, 당사국의 더욱 완전한 규약 준수에 관한 제안과 권고, 역할을 포함한 일반적 성격의 제안과 권고를 하는 데 있다. 회기별 실무그룹을 독립적인 전문가 위원회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제사회이사회 결정은 당사국들의 이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독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84. 그 책임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이사회는 사회권위원회에게 충분한 회기가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경제사회이사회(ECOSOC) 1985/17 결의에 따라, 사회권위원회의 효과적인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과 설비가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85. 사회권규약이 포괄하고 있는 복잡한 실체적 내용을 다루기 위해, 사회권위원회는 위원들에게 특정한 과제를 위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 성격의 초보적 제안이나 권고를 준비하거나 확보한 정보를 요약하기 위해 초안작성 그룹을 설치할 수 있다. 특히 사회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주제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 당사국과 전문가,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할 보고관을 임명할 수 있다. 또한 당사국들이 의무를 이행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경제적, 기술적 지원 계획에 관한 제안서를 기초하기 위해서도 보고관을 임명할 수 있다.

86.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규약 22조와 23조에 따라, 유엔의 다른 기관과 전문 기구, 다른 관련 조직들과 함께 사회권규약의 점진적인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국제적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해야 한다.

87. 사회권위원회는 6년 주기 내에서 각기 다른 시기에 제출된 보고서들을 일괄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의 현행 6년의 보고주기를 재고해야 한다. 또한 사회권위원회는 당사국들의 보고서 준비를 도울 수 있는 지침을 재검토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제안해야 한다.

88. 사회권위원회는 선별된 주제들에 대해 당사국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와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

89.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규약에 포함된 의무의 평가와 관련된 방법론적 문제들에 대해 적절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권리의 실현 정도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지표를 참조하는 것은 규약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사회권위원회는 전문기구들이 채택한 지표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어떤 차이점이 확인되면 관련 전문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 조사를 이끌어내고 독려해야 한다.

90.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가 성취된 진전과 직면한 어려움을 의미있게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사회권위원회는 언제든지 당사국이 제기하고자 하는 정확한 이슈나 문제들을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

91. 경제사회이사회(ECOSOC) 1985/17 결의에 따라,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권위원회는 '(당사국)보고서 심의에 대한 요약'과 더불어 심의 기간에 제기된 주요 쟁점들을 심의해야 한다.

C. 위원회와 전문기구, 그밖의 국제기구와의 관계(Relations between the Committee and Specialized Agencie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s)

92. 사회권위원회의 설립은 위원회와 전문기구들 그리고 국제기구들간에 긍정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회로 보아야 한다.

93. 사회권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전문기구들의 기여를 높일 수 있다면, 사회권규약 18조에 따른 새로운 협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행에 관한 업무 수행방식이 각 전문기구마다 다양하다면, 18조에 따른 협의를 해나감에 있어 유연성을 지니는 것이 적절하다.

94. 4부에 따른 규약 이행을 제대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이해를 지닌 사람들에 대해 전문기구들과 사회권위원회 사이에 대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상호협의를 통해 사회권규약의 준수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들을 개발하고,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며, 18조에 따라 전문기구들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협의할 필요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구들이 채택한 관련 절차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권위원회의 회의에 관련 기구들의 대표단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 가치있는 일이다.

95. 만약 사회권위원회의 위원들이 관련 전문기구들을 방문하여, 직접적 만남을 통해 사회권규약 권리들의 실현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배우고, 기관들과 협력 가능한 영역들을 논의한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96. 사회권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들의 실현과 관련된 가용자원의 배분에 관한 생각들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사회권위원회와 국제금융기구들과 개발기구들 사이에서 협력이 시작되어야 한다. 상호교류 시에는 당사국들의 규약 이행 노력에 국제적 경제원조가 미치는 영향과 규약 22조에 따른 기술적·경제적 협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97. 유엔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사회권규약의 19조에 따른 책임과 함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관련된 의제들을 검토할 때, 사회권위원회의 업무를 고려에 넣어야 한다.

98.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시민·정치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과 관련되어 있다. 대부분의 권리들이 둘 중 하나의 권리 범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처럼 명백히 설명될 수 있지만, 몇몇 권리들과 규정들은 명백한 차이를 구분할 수 없다. 게다가 두 규약 모두에 담긴 공통의 조항과 규정들도 있다. 따라서 사회권위원회와 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 간에 협의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99. 다른 국제법들이 사회권규약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경제사회이사회는 다양한 감독기구 사이의 효과적인 협의통로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시급히 고려해야 한다.

100.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과 관계된 국제적·지역적 수준의 정부간 조직들은 규약의 이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을 발전시키도록 촉구된다.

101. 사회권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의 산하기구이므로,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 자격을 갖춘 민간단체(NGO)는 사회권위원회의 회의에도 참석할 것이 촉구된다. 그리고 적절한 때, 1926년 경제사회이사회(ECOSOC) 결의 1296(XLIV)에 따라 정보를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

102. 사회권위원회는 정부간 기구나 비정부기구뿐 아니라 연구기관들과도 협력하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법 제도들에 관한 판례와 그 밖의 해석자료들을 기록하고, 구축하며 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103. 23조에서 권고된 조치들 중 하나로서, 사회권위원회의 활동과 당사국에 의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실현에서의 진전을 검토하기 위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이 장려된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The Maastricht Guidelines on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도입

림버그 원칙 제정 10주년을 기념하여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Jurists), 알빈 모건 인권연구소(Urban Morgan Institutional on Human Rights), 마스트리히트 법대 인권연구소(Centre for Human Rights Faculty of Law Maastricht University) 등은 30여 명 이상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1997년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마스트리히트에서 만났다. 이 회의의 목적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의 특징과 범위, 적절한 대응 및 구제와 관련해 림버그 원칙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만장일치로 1986년 이래 국제인권법의 발전을 반영한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에 동의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를 이해하고 결정·판단하는 것과 관련돼 있고, 특히 국제·지역·국내 차원의 특별 감독 및 사법 기관에서 구제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제1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의미

1. 1986년 림버그 원칙이 채택된 이후, 전세계 인구의 1/4 이상이 극적인 생활의 진보를 이루고 있는 반면, 16억이 넘는 사람들의 경제·사회적 조건은 경악할 정도로 더욱 열악해졌다. 부자와 빈자 사이의 격차는 지난 30년 동안 2배로 벌어졌다. 세계 인구 중 가장 가난한 1/5은 전세계 수입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가장 부자인 1/5은 전세계 소득의 85%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의 삶의 조건이 심하게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상당수의 인류에게 경제·사회·문화적 권

리의 향유는 환상에 불과한 것이 되고 있다.

2. 냉전종식 이후, 전세계 많은 지역에서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인간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것은 국제, 국내 금융시장과 기구들이 만든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이고, 많은 국가들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진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노력에 의한 것이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이 이제 더 이상 국가의 행위에 의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여전히 국제법상으로 국가에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보장해야 할 궁극적 책임이 있음에도 말이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를 시정하는 과제가 보다 복잡해지고 있어, 이러한 권리들을 진지하게 다루면서 이 분야에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성을 거론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3. 1986년 이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증진하는 중요한 법적 발전들 역시 있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준사법적 역할의 등장과 조약들의 채택이 그것이다. 조약에는 1996년 개정된 유럽사회헌장과 집단청원을 가능하게 하는 유럽헌장 추가의정서, 그리고 1988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의 미주 인권협약 산살바도르 의정서가 있다. 국가들은 7개의 유엔 세계회의(1992-1996)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다루겠다고 굳은 약속을 했다.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각각의 선택의정서안을 통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대한 책임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분야와 관련해 지역, 국제민간기구(International NGO)와 국내시민사회 운동 안에서 의미 있는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

4. 모든 인권은 불가분하고 상호의존적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인간

존엄을 위한 중요성이 같다는 점은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시민·정치적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듯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5. 시민·정치적 권리와 마찬가지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도 규약의 의무를 국가가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국제법하에서 인권 침해이다. 림버그 원칙의 아래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관계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분야의 국제 및 국내법의 다른 개념을 해석,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절하다.

제2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의 의미

존중, 보호, 실현의 의무

6. 시민·정치적 권리와 마찬가지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도 국가에 세 가지 형태의 이행의무를 부과한다. 그것은 존중, 보호, 실현의 의무이다. 세 가지 이행의무 중 어느 것이라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들 권리의 침해를 구성한다. 존중(respect)의 의무는 국가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향유하는 데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자의적인 강제퇴거에 관여했을 경우, 주거권을 침해한 것이다. 보호(protect)의 의무는 제3자가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국가가 막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기업이 노동자의 기본적인 일할 권리와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만드는 데 실패한다면 노동권에 대한 인권침해이다. 실현(fullfill)의 의무는 국가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완전히 실현시키기 위해 적절한 법률·행정·예산·사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수적인 기초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에 해당

한다.

행위와 결과의 의무

7. 존중, 보호, 실현의 이행의무 각각은 행위(conduct)의 의무와 결과(result)의 의무의 요소를 포함한다. 행위의 의무는 개개의 권리 향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된 조치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건강권의 경우, 행위의 의무는 모성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행동강령의 채택과 이행을 수반한다. 결과의 의무는 국가가 세부적인 실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목표를 성취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건강권과 관련해 결과의 의무는 모성사망률을 1995년 제4차 북경세계여성회의와 1994년 카이로 인구개발회의에서 합의했던 수준까지 줄여야 한다.

재량의 여지

8. 시민·정치적 권리의 경우처럼, 국가는 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수단을 선택하는 데 있어 재량의 여지가 있다. 국가의 관행과 국내법원 및 국제조약 감독기구들이 구체적 사례와 상황에 법적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편적 최저기준의 개발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범위, 성격, 한계에 대한 공통적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은 오직 점진적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시민·정치적 권리에서도 마찬가지로인 것처럼, 특정 조치는 즉각 이뤄져야 하고 다른 조치들은 가능한 한 빨리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 국가의 법적 의무의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므로 해당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향해 측정 가능한 진보를 보여줘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 국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핑계로 2조 “점진적인 실현”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사회·종교·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가 규약상의 권리를

훼손하고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최소 핵심의무

9. 각 권리들의 최소한의 필수적인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가 규정한 '최소 핵심의무'를 국가가 충족시키지 못할 때 규약상의 권리는 침해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당한 숫자의 개인들이 필수적인 식량·기초의료·기본적인 쉼터와 살 집 혹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 당사국은 규약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최소 핵심의무는 해당국의 이용 가능한 자원의 양 혹은 어떤 다른 요소와 어려움에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자원의 가용성

10. 많은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자원에 대한 심각한 고려 없이 그러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경우들에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은 충분한 재정과 물질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존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림버그 원칙 25~28항과 사회권위원회의 법리에서 확인했듯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한 국가의 최소 의무가 자원의 부족 때문에 경감되지는 않는다.

국가정책

11. 국가가 정책 혹은 관행으로, 작위 혹은 부작위에 의해 고의로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무시하거나, 행위와 결과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다. 뿐만 아니라 성별,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다른 의견, 국적,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 지위에 근거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를 동등하게 향유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차별을 한다면, 그것은 규약상 권리의 침해다.

젠더(gender, 인지적 성) 차별

12. 규약상 권리와 관련해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성차별철폐협약이 규정하는 여성에 대한 평등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 기준은 사회적·문화적 및 기타 구조적 불이익으로부터 나오는 젠더(인지적 성) 차별을 포함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행불능

13. 국가의 작위 혹은 부작위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국가의 무능력과 규약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 통제 밖의 이유로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국가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지진 때문에 교육기관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면 그것은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경우인 반면, 적절한 대책 없이 사회보장 체계를 없애는 것은 국가가 의무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작위에 의한 침해

1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는 국가의 직접적인 행동 혹은 국가의 불충분한 개입을 통해 일어난다. 침해의 예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 a. 사람들이 현재 향유하고 있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데 필요한 법률의 공식적인 폐지 내지는 효력 정지.
- b. 법률에 의한 차별 혹은 강제적 차별을 통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것.

- c. 제3자가 취한 조치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부합할 수 없는 것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 d. 평등을 추구하고 소외집단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더욱 증진할 목적 없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관련된 현행 법적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나 정책을 채택하는 것.
- e.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보장되는 수준을 감소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퇴행적 조치를 채택하는 것.
- f. 규약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의 점진적 실현을 방해하거나 중단시키는 계산적 행위. 국가가 규약이 허용한 제한 내에서의 행동, 가용자원이 없거나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은 제외된다.
- g. 공공재정의 축소 혹은 유용 - 그러한 지출을 감소하거나 유용하면서 모든 사람의 최저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수반하지 않거나 그러한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때.

부작위를 통한 침해

15.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는 국가가 법적 의무로부터 비롯된 필수적 조치를 하지 않을 때도 일어난다. 다음의 것이 그 예다.
- a. 규약이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 b. 규약상의 의무에 명백히 모순되는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는 것.
 - c. 규약의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이나 법률을 실시하지 않는 것.
 - d.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을 규제하지 않는 것.
 - e. 규약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최대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

- f.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실현을 감독하지 않는 것, 이를테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실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하지 않는 것.
- g. 규약이 보장하는 권리의 즉각적인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없애는 것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 h. 규약에 따라 즉각적으로 제공해야 할 권리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것.
- I.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권리 실현의 국제적 최소기준을 그만큼의 권한이 있음에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 j. 다른 국가, 국제기구 내지 초국적 기업과의 쌍무 내지 다자간 협정이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분야의 이와 관련된 국제법적 의무를 참작하지 않는 것.

제3부 침해의 책임

국가의 책임

16. 2부에서 언급된 침해는 해당 국가의 사법 관할권 안에서 일어났다면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책임이 있는 국가는 피해자를 위한 조사와 기소, 구제 조치를 감독하는 등 그러한 침해를 시정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

외국의 지배 혹은 점령

17. 외국의 지배하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박탈했다면 그 책임은 해당 영토를 사실상 통치하고 있는 국가의 행위에 있다. 이것은 식민주의, 다른 형태의 외국 지배와 군사점령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영토를 지배하거나 점령하고 있는 세력이 경제·사회·문화적 권

리의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저야한다. 국가들의 연합 활동에 의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도 있다.

비국가적 실체에 의한 행위

18. 국가의 사법권 내에서 다국적기업 등 개인들 혹은 사인이 다른 개인들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박탈하지 않도록 해야 할 국가의 책임도 보호의 의무에 해당된다. 국가는 그러한 비국가 행위자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태만히 함으로써 일어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국제기구에 의한 행위

19. 국가들이 공동으로 행동하는 국제기구에 참여할 때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신이 당사국으로 있는 국제기구의 프로그램과 정책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국가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제금융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들이 그들의 정책과 관행을 시정해 그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박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를 없애는 데 매우 결정적이다. 사무국이나 민간단체뿐 아니라 그러한 기구의 당사국들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안들을 고려해 국제기구들이 자신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추세를 개별적으로 혹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독려하고 일반화시켜야 한다. 국제기구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연관된 정책결정에 압력을 행사하는데, 그 압력에 저항하기엔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에서 그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실시되려고 할 때 특히 그렇다.

제4부 침해의 희생자들

개인과 그룹

20. 시민·정치적 권리와 마찬가지로 개인과 집단 모두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침해되는 피해자일 수 있다. 저소득층, 여성, 선주민, 부족, 점령지역의 주민, 난민신청자, 난민, 국내유민, 소수자, 노인, 아동, 소작빈농, 장애인, 홈리스 등의 집단은 불평등하게 피해를 입어 고통받는다.

형사처벌

2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들은 순전히 피해자로서의 그들의 지위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홈리스가 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과 같은 것이 그 중 한 예가 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 때문에 처벌받아선 안 된다.

제5부 침해의 구제 및 기타 대책

구제가 가능케 하는 것

22. 어떤 개인이든 집단이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들은 국내 및 국제적 차원 모두에서 효과적인 사법적 혹은 기타의 적절한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적절한 배상

2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침해당한 모든 피해자들은 적절한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적절한 배상이란 상환, 보상, 원상회복 및 재

발방지 등의 형태를 띠 수 있다.

권리 침해를 공식적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

24. 자신들의 판결이 해당 국가가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용인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국내 사법부 및 기타 기구들은 주의해야 한다. 최소한 국내 사법부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와 관련된 판결을 내릴 때 국제인권법이나 지역인권법의 관련 규정들을 해석의 길잡이로 고려해야 한다.

국내기구

2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옴브즈맨 제도와 같이 인권을 증진하고 감시하는 기구는 시민·정치적 권리의 침해를 시정하는 데 기울일 때와 마찬가지로 헌신을 다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시정해야 한다.

국제조약의 국내적 적용

26. 국내법 체계 안에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인정하는 국제조약들을 직접적으로 수용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구제조치들의 범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이는 모든 상황에서 고무돼야 한다.

불처벌

27. 국가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가 처벌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효과적인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침해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 그들의 행동의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일이 없도록 효과적인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법률전문가의 역할

28.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들이 실효성있는 사법적 및 기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호사, 판사, 변호사협회, 법률 단체들은 1995년 국제법률가위원회가 벵갈로(Bangalore) 선언 및 행동강령에서 권고한 것처럼 직업 활동을 함에 있어 사회적 침해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별보고관

29.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고, 조기에 경고하고, 감시하고, 시정하는 것과 관련 국제 기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유엔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분야의 주제별 특별보고관을 임명해야 한다.

새로운 규범

30.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존중, 보호,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이행 의무의 내용을 보다 정교화하기 위해 국가와 관련 국제기구들은 특히 노동권, 식량권, 주거권, 건강권 등 구체적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들에 관해 새로운 규범들을 채택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선택의정서

31. 규약상의 권리들에 관해 개인이나 집단이 진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의정서를 지체없이 채택하고 비준해야 한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안)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도 똑같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권리협약의 선택적 진정 절차의 초안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기록과 모니터링

32. 민간단체, 정부, 국제기구 등 모든 관련 행위자들은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대해 기록하고 모니터해야 한다. 관련 국제기구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분야에서 국제인권규범이 잘 이행 되도록 지원해야 함은 필수적이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증진 역시 수임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신속하게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고 충분한 직원과 재정을 부여해야 한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기구 및 기타 국제기구들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권리로서 충분히 강조해야 하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대응하는 데 기여하지 않고 있다면, 앞으로는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반논평 3(General Comment No. 3), 1990년 5차 회의

당사국의 의무의 성격(The nature of States parties obligations)

1. 2조는 규약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특별히 중요하고 규약의 다른 모든 조항들과 역동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에 틀림없다. 이 조항은 규약 당사국들이 행해야 할 일반적인 법적 의무의 성격을 묘사한다. 이러한 의무들은 (국제법위원회의 작업에 의거해) 행위의 의무와 결과의 의무 모두를 포함한다. 종종 이 규약의 2항에 사용되는 서술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2조에 담겨 있는 내용 간의 차이를 대단히 강조하는 반면, 상당한 정도의 유사성이 있음은 그다지 인식되지 않는다. 특히, 점진적 실현을 명시하고 가용 자원의 한도에 따른 제약을 인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규약은 또한 즉각적인 효과를 발생해야 할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것들 중, 당사국의 의무의 정확한 성격을 이해하는 데 특별히 두 가지가 중요하다. 이들 중 하나는 … 관련된 권리들이 “차별 없이 행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다른 하나는 2조 1항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인데, 이는 다른 고려에 의해 조건지어지거나 한정되지 않는다. 문장의 충분한 의미는 약간 다른 언어 번역을 지적함으로써 또한 평가될 수 있다. 영어에서 조치를 취한다는 “to take steps”, 불어에서는 “to act”(s'engager a agir) 그리고 스페인어에서는 “adopt measures”(a adoptar medidas). 따라서 관련 권리들의 완전한 실현은 점진적으로 성취될지 모르지만, 그 목표를 향한 조치는, 관련 국가가 규약을 비준한 이후 합리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취해져야 한다. 그러한 조치들은 계획적이어야 하고, 구체적이고, 규약이 인지하고 있는 의무들을 충족시키는 데 가능한 한 목표를 명확히 두어야 한다.

3. 조치를 취할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방법(수단)들에 대해 2조 1항은 “특히 입법조치를 포함해, 모든 적절한 수단”이라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많은 경우에 입법조치가 높이 장려할 만하고 몇몇 경우에는 불가피하다고까지 말한다. 예를 들어, 필요한 수단으로서 건전한 입법적 기초 없이 차별에 맞서 효과적으로 싸우기란 어려울 것이다. 6조부터 9조까지의 조항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뿐 아니라 건강, 아동과 모성의 보호, 그리고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도 입법 조치는 많은 면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것이다.

4.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이와 관련해 취한 입법조치들 중 최소한 몇 가지들을 구체화하는 데 일반적으로 충실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규약에서 특별히 명시하고 있듯이, 입법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당사국의 의무를 다했다고는 할 수 없다.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해”라는 문장에 완전하고도 본질적인 의미가 부여되어야 한다. 각 당사국이 각각의 권리들과 관련된 상황하에서 어떤 수단이 가장 적절한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지만, 택해진 수단의 ‘적절함’이 언제나 자명한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당사국의 보고서는 취해진 수단들뿐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그것이 왜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근거도 제시해야 한다. 모든 적절한 수단들이 취해졌는지 여부에 대한 궁극적인 결정은 위원회에 남겨져 있다.

5. 국내법 제도에 상응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권리에 대한 사법적 구제 조항은 입법조치 외에 적절한 조치 중 하나다. 위원회는, 이를테면 차별 없이 인정된 권리를 향유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사법적 혹은 다른 효과적 구제 조항을 통해 적절히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실제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이기도 한 국가들은 이미 (2조 1항, 2조 3항 그리고 3조와 26조에 의해) 규

약이 인정하는 권리와 자유(평등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를 침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인 구제”(2조 3항(a))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밖에도, 3조, 7조(a)(i), 8조, 10조(3항), 13조 2항 (a), 13조 3항, 4항 그리고 15조 3항 등, 국내의 많은 법 제도 내에서 사법부 및 다른 기구들에 의해 즉각적인 적용이 가능한 듯한 조항들이 많이 있다. 지적된 조항들이 원래부터 자동발효(다른 조약이나 법을 기다리지 않고)될 수 없는 것이란 주장은 더 이상 지속되기 힘들 것 같다.

6. 규약이 인정하고 있는 권리의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고 있는 특정한 정책들이 입법적 형태로 채택된 곳(국가)이라면, 권리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개인들과 집단들을 위해 그러한 법들에 근거해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위원회는 알고자 한다. 헌법이 특정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 혹은 규약의 조항이 국내법에 직접적으로 통합된 경우, 위원회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관련 현존하는 헌법 조항들이 약화됐거나 중요하게 바뀐 경우들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또한 원한다.

7. 2조 1항의 목적에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조치들은 행정적, 재정적, 교육적 그리고 사회적 조치들을 포함(거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한다.

8. “특별히 입법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민주적이고 모든 인권이 존중되는 것을 기본으로 할 뿐, 정부의 특정 형태나 경제 제도를 요구하거나 전제하지 않음을 위원회는 인식한다. 따라서, 정치·경제 제도와 관련, 규약은 중립적이고 따라서 그 원칙은 사회주의 혹은 자본주의 제도, 중앙계획적 혹은 자유방

임 경제의 혼합, 어느 특정한 접근이 필요하다거나 장려할 만하다고 배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규약의 전문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두 인권규약의 상호의존성과 상호불가분성이 그 구조에서 인식되고 반영되기만 한다면, 규약이 제시하고 있는 권리들이 매우 다양한 경제 그리고 정치 구조 내에서 실현이 가능하다고 재확인하고 있다. 위원회는 다른 인권들 그리고 특히 발전권과의 연관성 또한 주목한다.

9. 2조 1항에 반영돼 있는 결과의 주요 의무는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점진적 실현”이란 용어는 종종 이 문장의 의도를 드러내는 데 사용된다. 점진적 실현이란 개념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은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성취될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의무는 모든 관련 권리들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즉각적인 의무를 명시하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조의 내용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일이 걸려, 즉 점진적으로 실현될 거라고 보는 것이 내용적 의무가 없는 것처럼 잘못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한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함에 있어 국가들이 처하는 어려움과 실제 현실을 반영하는 유연성의 장치다. 다른 한편 이 문장은, 전체적인 목적 즉 사실상 규약의 존재 이유가 관련 권리들의 충분한 실현을 위해 당사국들에 명확한 의무를 지우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 따라서 규약은 그와 같은 목적에 가능한 빨리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위한 의무들을 부과한다. 나아가, 역행 조치는 아주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규약과 최대한의 가용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라는 문맥 속에 제시하는 권리들의 총체성을 참고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10. 위원회에 선행하는 기구들에 의해 획득된 경험뿐 아니라 위원회의 넓은 경험에 근거해 십년 넘는 기간 동안 당사국의 보고서들을 검토하면서, 위원회는 각 권리들의 필요한 최저선을 충족시켜야 할 최소한의 핵심의무는 모든 당사국에게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테면 상당한 수의 개인들이 필수적인 음식과 기초 의료 서비스, 기본적인 쉼터와 주거 혹은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교육(의 기회)이 박탈된 상태에 있는 당사국은 규약하의 의무들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규약이 그러한 최소한의 핵심적 의무들을 두지 않은 것으로 읽힌다면, 그것은 규약의 존재 이유가 상당히 훼손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최소한의 핵심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관련 국가 내에 존재하는 제약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2조 1항은 각 당사국들이 “가용 자원의 최대한” 필수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당사국들은 가용 자원의 결핍으로 인해 최소한의 핵심적 의무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처분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려는 모든 노력이 이뤄졌는지 증명해야 한다.

11. 그러나 위원회는 가용 자원이 명백히 부족한 곳에서도 국가는 여전히 관련 권리의 가능한 가장 폭넓은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 정도 혹은 특히 실현되지 못한 정도를 감시하고, 인권의 증진을 위한 전략과 계획을 고안해내야 할 의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원 제약으로 인해 사라지지 않는다. 위원회는 일반논평 1에서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이미 다룬 바 있다.

12. 마찬가지로, 위원회는 구조조정이나 경제 후퇴의 과정에 의해서 건 다른 이유에서건 심각한 자원 제약의 시기에도 사회의 취약한 구

성원들은, 표적을 명확히 하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드는 계획을 채택함으로써 보호될 수 있고 사실 보호되어야 마땅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을 지지해 위원회는 “인간 얼굴을 한 구조조정: 취약집단의 보호와 성장의 증진”이란 제목으로 유니세프가 행한 분석, 『1990년 인간개발보고서』의 유엔 개발계획의 분석과 세계은행에 의해 이뤄진 『1990년 세계개발보고서』의 분석을 주목한다.

13. 주목해야 할 2조 1항의 마지막 요소는 모든 당사국은 “개별적으로 또는 특별히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 국제적 원조와 협력을 통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약의 기초자들은 한 국가 내에 존재하는 자원들뿐 아니라 국제 협력과 원조를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것 모두를 언급하기 위해 “가용 자원의 최대한”이란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에 위원회는 주목한다. 나아가, 관련 권리들의 완전한 실현을 지원하는 그러한 협력의 핵심적 역할은 11조, 15조, 22조, 그리고 23조에 포함된 특정 조항들에 의해 더욱 강조된다. 22조와 관련, 위원회는 국제 협력과 관련 존재하는 기회와 책임들에 대해 일반논평 2에서 이미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23조는 또한 “인정된 권리들의 성취를 위한 국제 행동”의 방법 가운데 다른 활동들뿐 아니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 또한 특별히 확인하고 있다.

14. 위원회는 유엔 헌장 55조, 56조, 국제법의 정교화된 원칙들 그리고 규약 그 자체의 조항들에 따라 발전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이 모든 국가의 의무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별히, 발전권 선언의 중요성과 함께 가입국들이 발전권 선언에서 인정하고 있는 모든 원칙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특별히 언급한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할 모든 국가들이 국제적 원조와 협력에 관한 적극적인 계획을 갖

지 않을 경우, 권리의 실현은 많은 국가들에서 성취되지 않는 열망으로 남을 것이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또한 일반논평 2의 내용을 상기시킨다.

부록 7

일반논평 9(General Comment No. 9), 1998년 19차 회의

사회권규약의 국내적 적용(The domestic application of the Covenant)

A. 사회권규약이 국내법 질서 안에서 효력을 갖게 할 의무

1. 당사국의 이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일반논평 3(1990)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는 당사국 의무의 성격과 범위에 대해 기술했다. 일반논평 9는 일반논평 3에서 이미 기술한 내용의 일부 요소를 좀더 정교화하기 위한 것이다. 당사국의 중심 의무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사회권규약)에서 인정된 권리가 자국 내에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적절한 수단”으로 사회권규약에서 인정한 권리가 효력을 갖도록 정부에 요구함으로써 사회권규약은 각국의 사법 및 행정제도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여타 관련된 사항이 충분히 감안될 수 있게 하는 광범위하고 융통성 있는 접근을 채택한다.

2. 그러나 여기서 융통성은 어디까지나 사회권규약에서 인정된 권리가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당사국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와 공존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인권법의 기본적인 요건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권규약의 개념은 국내법 체계 안에서 정당하게 인정돼야 하고,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집단 누구에게든 적절한 시정 수단이나 구제조치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국가가 이 분야에 대한 책임감을 발휘하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3. 사회권규약을 국내에 적용하는 데 관련된 문제들은 국제법의 두 가

지 원칙하에서 검토돼야 한다. 첫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27조(국내법과 조약의 준수)에 따라 “당사국은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 조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사회권규약 당사국은 조약의 의무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 두 번째 원칙은 세계인권선언 8조에서 말하듯,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권한 있는 국내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자유권규약)은 2조 3항 (b)에서 “사법적인 구제조치를 발전시킬”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하고 있는데 사회권규약에는 그에 상응할 만한 직접적인 조항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대해 국내에서의 법적 구제조치를 제공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하려면, 해당 당사국은 법적 구제조치가 사회권규약의 2조 1항에 비춰 왜 ‘적절한 수단’이 아닌지를 밝히거나 혹은 실행한 다른 방법에 비춰볼 때 법적 구제가 왜 불필요한지를 밝혀야 한다. 이를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여러 경우들에서 볼 때, 사회권위원회는 당사국이 실행한 다른 조치들을 사법적 구제로 보완하거나 강화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본다.

B. 국내법 체계 안에서 사회권규약의 지위

4.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인권규범은 당사국의 국내법 체계 안에서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은 국내 법정이나 기타 심판소에서 그들의 권리 행사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 구제조치들을 모두 사용하도록 하는 규칙은 국내 구제조치의 우선성을 강화한다. 개인청원을 위한 국제 절차의 존재와 계

속적인 발전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는 궁극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국내 구제조치를 보완할 따름이다.

5. 사회권규약은 각 국의 국내법 체계 안에서 사회권규약이 이행되도록 하는 구체적 수단을 의무로서 요구하고 있지 않다. 또한 사회권규약을 국내법이 종합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거나 국내법상에서 어떤 특별한 지위에 합치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하지만 비록 규약상 권리가 국내법에서 효력을 갖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각 당사국이 결정할 문제라 하더라도, 만들어낸 결과물이 당사국의 의무에 부합하도록, 실행하는 수단이 적절해야 한다. 선택한 수단은 당사국이 사회권규약하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사회권위원회의 심사의 한 부분으로서 평가의 대상이 된다.

6. 사회권규약과 관련한 당사국의 실시 상황을 분석해 보면, 당사국들이 다양한 접근을 취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국가는 어떠한 구체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조치를 취한 국가들 중에 어떤 국가들은 사회권규약상의 구체적 용어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기존의 법률을 보완하거나 개정함으로써 사회권규약을 국내법으로 완전히 변형한 경우가 있다. 다른 국가들은 사회권규약을 국내법으로 채택하거나 국내법에 포함시켰는데, 이때 사회권규약의 용어들은 국내법 체계 안에서 훼손 없이 유지돼 공식적인 효력을 발휘한다. 이는 헌법의 조항이 국제인권조약에 합치하지 않는 어떠한 국내법보다 국제인권조약에 우선성을 부여함으로써 이뤄진다. 사회권규약에 대한 당사국들의 접근은 국내법 체계 안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이 어떤 지위를 갖게 되는지에 따라 상당부분 좌우한다.

7. 그러나 어떤 방식이 선호되든, 사회권규약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할

의무로부터 몇 가지 원칙이 나오고, 따라서 그 원칙들은 존중돼야 한다. 첫째, 선택된 이행수단은 사회권규약에 대한 당사국의 의무를 다 하는데 적절해야 한다. 사회권규약상의 권리가 국내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사법심판 가능성(아래 단락 10 참조)을 보장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다. 둘째, 해당 국가에서 다른 인권을 보호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방법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 사회권규약에 효력을 부여하는 조치가 다른 인권조약들에 사용된 조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면,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이때, 사회권규약에 사용된 조치가 시민·정치적 권리를 다루는 조약들에 사용된 것에 상당한 정도로 상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8. 셋째, 당사국들이 사회권규약의 조항들을 국내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사회권규약이 공식적으로 강제하지는 않지만, 사회권규약의 조항들을 국내법에 포함하는 방식은 장려할 만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사회권규약을 국내법의 일부로 삼는 것은 사회권규약의 의무를 국내법으로 재해석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국내 법정에서 개인이 사회권규약을 직접적으로 원용할 수 있게 한다. 이 때문에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규약을 국내법의 일부로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것을 강력히 장려한다.

C. 법적 구제의 역할

법적 혹은 사법적 구제?

9.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가 항상 사법적 구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 많은 경우에서 행정적 구제로 충분할 것이고, 당

사국의 사법권 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에 기초해, 모든 행정당국이 그들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회권규약의 요건들을 충분히 고려할 거라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모든 행정적 구제는 모든 이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하에 이뤄져야 하며, 시의 적절하고,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런 유형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법적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한편, 어떤 경우에는 사법적 구제가 국가의 의무인 때도 있는데, 예를 들어 차별금지에 관해서는(그러나 이것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사회권규약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정한 형태의 사법적 구제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규약의 권리가 사법부의 일정한 역할 없이는 온전히 효력을 가질 수 없을 때라면 반드시 사법적 구제가 필요하다.

사법심사 가능성

10. 시민·정치적 권리가 침해됐을 때는 사법적 구제가 필수적인 것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감스럽게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해서는 그 반대의 가정이 이뤄지곤 한다. 권리의 본질을 보나 사회권규약의 관련 규정을 보나, 이러한 차이는 정당화될 수 없다.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규약의 많은 규정들이 즉각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견해를 이미 확실히 밝혔다. 따라서, 일반논평 3(1990)에서, 3조, 7조의 (a), (i), 8조, 10조의 (3), 13조 2(a), (3), (4), 15조 (3)을 즉각적인 이행이 가능한 예로서 들었다. 이 점에 있어서, 사법심판 가능성(법원에서 적절히 해결되는 사안을 지칭)과 자기 집행되는 개념(더 정교화될 필요 없이 법원이 바로 원용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법체계의 일반적인 방식을 검토해야 하겠지만, 대다수의 체계에서, 최소한의 의미 있는 사법적 특성도 없는 것으로 여겨져야 할 규약상의 권리는 없다. 예산배치가 필요한

사안들은 법원보다는 행정부에 남겨질 문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정부 부처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지만, 중요한 재정 관련 합의를 갖는 상당히 넓은 분야들에 이미 법원이 관련을 맺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개념적으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법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엄격하게 분류, 채택하는 것은 자의적인 것이고, 두 종류의 인권이 나눌 수 없고 서로 의존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이는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소외된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원의 권한을 현저히 축소시키게 될 것이다.

자동발효

11. 사회권규약은 국제조약의 규정들의 자동발효 여부가 선택될 수 있는 법체계 내에서 사회권규약상의 권리가 자동발효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실제, 초안이 만들어질 때, 본 사회권규약은 “자동발효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구체적 규정을 삽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강하게 거부당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약의 규정이 자동발효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부나 입법부가 아니라, 법원의 몫이다. 그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법원 및 심판소는 사회권규약의 성격과 합의, 그리고 사회권규약의 이행에서 사법적 구제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테면 정부는 재판과 관련해, 사회권규약하의 의무가 효력을 발휘하도록 국내법의 해석을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법관을 연수할 때도 사회권규약의 사법심사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 규범들이 비(非)자동발효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어떠한 선입견도 없애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사실, 사회권규약의 많은 규정들이 법원이 흔히 자동발효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다른 인권조약의 규정들만큼 최소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용어로 쓰여져 있다.

D. 국내 법원에서의 사회권규약의 대우

12. 정부의 이행 보고서에 관한 사회권위원회의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권규약의 규정들이 “법원, 기타 심판소 혹은 행정 당국에서 원용되고, 그들에 의해 직접 집행”될 수 있는지에 관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일부 국가들이 그러한 정보들을 제공하긴 했지만, 장래의 보고서에선 이러한 요소들을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특히, 사회권위원회는 국내 법정이 사회권규약의 규정들을 원용한 경우가 있다면, 법원의 법리의 세부사항을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

13.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국가들의 실시 양식이 혼재돼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사회권위원회는 몇몇 법원들이 사회권규약의 규정들을 직접적으로 혹은 해석의 규범으로서 적용해 왔음을 주목한다. 다른 법원들은 원칙적으로는 국내법을 해석하는 데 사회권규약의 관련성을 인정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건에 관한 논리를 구성하고 판결할 때 사회권규약이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또 다른 법원들은 아직까지도 개인들이 사회권규약을 원용할 것을 요청한 사건들을 심리할 때 사회권규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해 왔다. 대부분 나라들에서 법원은 광범한 범위에 있어 사회권규약을 원용할 여지가 있다.

14. 사법적 심사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은 국가의 행위가 규약하의 의무에 합치하도록 필요한 경우 사회권규약을 고려해야 한다. 법원이 이러한 책임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국제인권적 의무를 항상 존중해야 할 법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15. 국내법이 가능한 한, 당사국의 국제법적 의무에 부합하는 방식으

로 해석돼야 한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법의 해석을 결정하는 자가 당사국이 사회권규약을 위반하게 하는 국내법의 해석과 당사국이 사회권규약에 부합하도록 하는 해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국제법은 후자의 선택을 요구한다. 평등과 차별금지의 보장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보호를 용이하게 하는 쪽으로, 최대한 넓게 해석돼야 한다.

도서출판 사람생각의 책들

한국 감옥의 현실

이승호·박찬운 외 지음 / 천주교인권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 엮음 / 420쪽 / 15,000원

인권교육 길잡이

인권운동사랑방·인권교육실 지음 / 302쪽 / 9,000원

김대중정부 1년 —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외 엮음 / 167쪽 / 8,000원

인간답게 살 권리 — IMF 이후 사회권 실태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사회권위원회 엮음 / 512쪽 / 15,000원

아시아의 인권교육 — 호주·인도·홍콩 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역 / 551쪽 / 15,000원

현대사상과 인권 — 옥스퍼드 엠베스 터 강의

스티븐 톱스·존 울즈 외 지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옮김 / 304쪽 / 12,000원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정인섭 지음 / 336쪽 / 12,000원

깨어나, 일어나

— 아이들이 쓴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인권운동사랑방·인권교육실 옮김 / 126쪽 / 8,000원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한국인권재단 엮음 / 725쪽 / 25,000원

모든 인간은... — 인권교육 지침서

유네스코 지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옮김 / 172쪽 / 10,000원

국제인권조약집

정인섭 편역 / 544쪽 / 15,000원

반부패 지도 I 반부패국민연대 편 / 510쪽 / 17,000원

반부패 시스템 제라미 포프 지음 / 김현곤 옮김 / 288쪽 / 10,000원

시민이 재판을! 백홍규 지음 / 272쪽 / 10,000원

미국의 종업원 소유 기업들

로버트 오프차트 편저 / 박노근 편역 / 352쪽 / 12,000원

잊히지 않는 사람들 류춘도 지음 / 160쪽 / 6,000원

옥중에 자유인 머물다 최지영 지음 / 김상일 옮김 / 117쪽 / 6,000원

검은 밤 검은 날 김수용 시집 / 151쪽 / 6,000원

나는 부끄러움을 찾았다 정달경 지음 / 382쪽 / 10,000원

법철학 1 — 서문과 서론 해경 지음 / 강유원 옮김 / 163쪽 / 7,000원

양심적 병역거부 안경환·정복희 편 / 394쪽 / 10,000원

재외동포법 정인섭 편 / 294쪽 / 10,000원

고교평준화 최대권·정인섭 편 / 248쪽 / 10,000원

성적 소수자의 인권 한인섭·담현아 편 / 284쪽 / 10,000원